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장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534
------------	------

2018년 6월 19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6월 4일, 김상훈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1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8년 6월 19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상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에 따라 일정 시간 운행 후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조례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을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-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(안 제1조 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# 다. 입법예고

-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생략

#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) : 원안동의
 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4조의6제2항에서 시·도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, 운행현실, 노선거리, 교통수요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휴식시간 범위를 해당 조례 규정과 같이 완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일정 시간 운행 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안전운행과 이용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대규모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높거나 또는 좁은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#### 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】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(이하 "휴식시간"이라 한다)을 보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】

제44조의6(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)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,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(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)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점부터 종점(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)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,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·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측면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,

마을버스 전체 249개 노선<sup>1)</sup> 운행시간 60분 미만이 195개 노선(78.3%)<sup>2)</sup>으로 대다수임에 따라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면서 마을버스 이용시민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휴식시간 적용에 따른 운수종사자 추가고용 및 마을버스 추가차량 구입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,

관련 법은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·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고, 운행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

1) 운행시간 : 최소 10분, 최대 135분, 평균 43분, 배차간격 : 최소 2~3분, 최대 40분, 평균 9~13분

2) 20분 미만 17개 노선(6.8%), 20분 이상 40분 미만 95개 노선(38.2%), 40분 이상 60분 미만 83개 노선(33.3%), 60분 이상 80분 미만 42개 노선(19.7%), 80분 이상 100분 미만 11개 노선(4.4%), 120분 이상 140분 미만 1개 노선(0.4%)

있어 1시간 기준으로 10분씩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 2시간에 20분 휴식시간을 보장받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

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비용증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을버스 영업현실을 반영하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) ⑦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 통기준 등) ① ~ ⑥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(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 통기준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                     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                    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                     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1                      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                      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                      간을 기준으로 10분이상의 휴식시                      간을 보장하여야 한다.</u>